## KOSHA GUIDE

C - 81 - 2013

전보건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4. 터널 공사(프론트 잭킹) 공통 안전조치 사항

- (1) 산업안전보건 규칙「제 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」및「제 39 조 작업지휘자의 지정」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 는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 작업계획 서의 내용은 해당 근로자에게 숙지되어야 하며 작업지휘자는 다음의 작업 에 배치되어야 한다.
  - (가)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
  - (나)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 지반의 굴착작업
  - (다) 중량물의 취급작업
  - (라) 항타기·항발기 작업
- (2) 작업중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·관리·개선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고려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3)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(가) 추진강관의 제원, 설계 기울기, 추진거리, 발진·도달 기지 규모, 장애물·지 장물의 종류, 횡단 대상
- (나) 발진·도달기지와 주변도로 상황
- (다) 전원설비, 굴착·운반 등 잔토처리 설비, 그라우팅 설비
- (라) 용접기구(케이블, 호스류, 용접기, 가스절단설비 등)
- (마) 기계장비(자재운반 및 이동, 굴착, 추진 장비 등)
- (4) 포괄적인 시공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, 필요 장소에 안전표지판, 경고등,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5) 관리감독자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프론트 잭킹 공법에 대한 기술과 안전교